



# 업무 협약서



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관광공사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기술된 상호협력 내용을 기초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연구 및 다양한 교육·문화사업의 교류·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 분야)**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협력한다.

1. 여성·가족 분야 및 사회적 약자 분야 연구·사업에 대한 협력
2. 기업 내 임직원 대상 인권침해(성희롱·성폭력 사안) 예방 및 성인지 교육 등 성평등 관련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협력
3. 도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캠페인, 홍보사업 등 공동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협력
4.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필요하다고 합의된 사항

## 제3조(비밀유지)

1.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자료 및 정보의 비밀유지와 유출방지를 위하여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2. 양 기관의 비밀유지의무 등은 체결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.

**제4조(협의 조정)** 양 기관은 신의 성실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 제5조(효력 및 협약기간)

1.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2.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3.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명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,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8월 11일



## 제3조(비밀유지)

1.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자료 및 정보의 비밀유지와 유출방지를 위하여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2. 양 기관의 비밀유지의무 등은 체결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.

제주여성가족연구원

원장 민무숙

민 무 숙



제주관광공사

사장 고은숙

고 은 숙